격차를 남기는 것은 아니고 합병에 의해 기초단체 간의 권한을 평등하게 한 것이 강제합병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인인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결국 기초단체간에 있어 단체자치의 평등성 창출이 합병의 강제성을 정당화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강제 합병을 추진하는 것에 의해 사회민주당 정권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가장 중시된 논점이 효율성의 문제였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것은 중앙정부가 교육이나 사회복지라 하는 대인 사회서비스를 위임사무로 하여 코뮨에 효율적으로 수행시키기 위해 코뮨의 규모 확대가 기도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효율성의 문제에서는 내부 효율성도 중시되고 있다. 기초단체의 행정에는 규모의 이익이 작용하고 코뮨의 규모를 크게 하면 공공 서비스의 코스트는 낮아진다고 하는 상정도 존재하지 않았던 셈은 아니다. 공공서비스를 보다 낮은 코스트로 공급한다고 하는 내부 효율성의 추구도 중요한 목표로 되었던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 내부 효율성의 추구는 조건이 붙은 추구 목표로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왕립조사위원회가 코뮨의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한 기준은 공공서비스의 코스트라 하는 내부 효율성에 한정되었던 셈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공공 서비스의 코스트를 낮춘다고 하는 관점에서 적정한 코뮨의 규모를 추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왕립조사위원회는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코뮨의 최소 규모를 내 보이는 것을 중시한 것이다.

거기에는 자치라고 하는 요소가 고려되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단체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적절한 규모라 하는 시점이 중시되고 있다. 혹시 역으로 합병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뮨 사이에서 공공 서비스마다 상호 협력할 필요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코뮨 마다 자주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공공 서비스를 결정하는 권한을 잃는 것으로 된다. 코뮨 간의 협력기관에 결정권을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왕립조사위원회는 기초단체가 그 지역 사회에서 영위하는 모든 공공 활동에 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기초단체가 지역 사회의 종합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보수파는 합병을 지방분권에 배반한다고 주장했다. 그 때문에 위임사무를 효율적으로 코뮨에 실시시키기 위해서는 합병에 의하지 않고 중앙정부로 부터 코뮨에 재정이전을 증강하고 코뮨 간의 협력 강화를 주장한 것이다.

게다가 코뮨과 道 및 중앙정부와의 사무 재배분을 주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9년제의 의무교육 중 상급과정을 중앙정부 혹은 道에 이관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보면 합병을 둘러싼 집권과 분권의 관계는 혼란해 진다. 합병에 반대하는 보수파는 지방분권이라 하는 관점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코뮨의 사무